

대통령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연 월 일	2023. 5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7호, 2023.4.25. 공포, 2023.8.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지정

나.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 환수 등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6조)

- 지자체장에게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를 부여하고, 국방부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가능
-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액수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함.
-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및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해 지원한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다.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범위 및 면적을 규정(안 제7조)

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지역기업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한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이하 ‘초과사업비’라 한다)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초과사업비의 발생 예방 및 발생시 국고지원 관련 검토를 위하여 담당 조직(이하 “담당 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조사, 분석 및 업무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징표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초과사업비의 지원) 전조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초과사업비 지원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 심의회에 송부한다.

③ 국유재산정책심의회(「국유재산법」 제26조 제4항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사업시행자가 기부할 대체시설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전항의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와 검토의견을 함께 심의한다.

④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초과사업비의 발생 원인 및 액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국방예산 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지원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의 신청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액수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제8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9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개략설계도서
 6. 계획평면도
 7. 재원조달계획서
 8.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1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② 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③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
호에 따른 공사감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②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